

#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688
------------	------

2017. 4. 21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7년 3월 10일, 김정태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나. 회부일자 : 2017년 3월 1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3회 임시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7.4.21. 상정·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김정태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시의 도시건축 문화진흥과 세계 선진도시와의 건축문화 교류 및 도시문제 해결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2017년부터 격년단위로 서울 도시건축비엔날레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으나,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 이에,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개최시기 및 기본방향, 조직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성공적이고 지속적인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행사를 개최하고자 조례 제정안을 발의함.

## 나. 주요내용

- 개최시기를 2017년부터 격년단위로 개최하도록 함(안 제2조)
- 서울비엔날레의 기본방향을 제시함(안 제6조)
- 조직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7조 ~ 제10조)
- 서울비엔날레의 개최 및 운영을 위해 전담조직을 지정 또는 설치하거나 출연기관을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시장은 출연기관이 서울비엔날레 업무를 수행할 경우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서울비엔날레 운영기금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출연기관의 장에게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제14조)
- 시장은 출연기관이 사업수행을 종료하였을 경우 잔여 재산을 서울시로 귀속하도록 함(안 제15조)

## 3. 검토보고 요지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 □ 배경 및 구성

- 이 조례안은 2017년 3월 10일 김정태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3월 13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조례안의 구성은 개최시기를 2017년부터 격년단위로 개최하도록

하고(안 제2조), 서울비엔날레 기본방향 제시(안 제6조), 조직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설치근거·기능 규정(안 제7~10조), 서울비엔날레 개최 및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지정 또는 설치, 출연기관을 통한 수행(안 제11조), 출연금 교부 및 운영기금 설치·운영(안 제12조),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등 제출, 출연기관의 지도 및 감독(안 제13~14조), 사업수행 종료시 잔여 재산의 서울시 귀속(안 제15조) 등 총 15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음.

- 참고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올해 9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총 66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돈의문박물관마을, 동대문·을지로 등 주요지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최될 예정임.(붙임1 참고)

## □ 국내·외 주요사례 검토

- 현재 국내·외에서 다양한 유형의 비엔날레(Biennale)<sup>1)</sup>가 개최되고 있는데, 크게 나누어 현대미술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전시 중 ‘건축’을 전시 프로그램의 일부로 포함하는 비엔날레(이하 ‘종합전시 비엔날레’)와 ‘건축’ 또는 ‘도시·건축’만을 전시 대상으로 하는 비엔날레(이하 ‘건축 비엔날레’)로 구분할 수 있음.<sup>2)</sup>
- 국내·외 비엔날레 개최사례를 종합해 보면, 세계적으로 현대미술과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로서의 건축 또는 건축 자체만을 주제로 한 비엔날레 행사가 다수 개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건축이 도시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공통된 인식에서 출발

1) ‘Biennale’는 ‘격년 행사’를 뜻하는 영어단어로서 이탈리아어에 기원을 두고 있음. (출처: 네이버 영어사전)

2) 전세계적으로 약 200여개 이상의 비엔날레가 존재하므로, 현대미술만을 전시하는 비엔날레는 검토에서 제외함

하여 현대도시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서 비엔날레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별첨1 참고).

- 특히, 홍콩·심천 도시건축 비엔날레의 경우 도시공간구조 및 관리, 도시재생과 건축을 주제로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가 유사 비엔날레와 달리 지속적으로 독창성과 차별성을 확보하여 국제적 명성을 지닌 행사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제도적 수단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 조례의 제정취지는 긍정적이라고 사료됨.

#### (1) 종합전시 비엔날레

- 현대미술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3대 비엔날레인 이탈리아 베니스 비엔날레 및 브라질 상파울루 비엔날레, 미국 휘트니 비엔날레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으며, 국내 사례로는 광주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 등이 있음.
- 이탈리아 베니스 비엔날레(Venice Biennale International Architecture Exhibition)
  - 1895년부터 베니스시 주최의 미술전시회로 시작되었으며 1930년부터 국가주최로 개최되었음.
  - 베니스 비엔날레는 6개월간 개최되며 미술뿐 아니라 영화, 건축, 음악, 연극 5개 부문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시간에 독립된 행사로 개최되는 행사로 전세계 60여개국에 참여하고 있음.
  - 전시는 본전시 및 특별전, 국가관전 등으로 구성되며, 1995년 한국관 건립이후 2014년 건축전 황금사자상을 수상한바 있음.<sup>3)</sup>

#### <14회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부문>



출처 : 베니스 비엔날레 홈페이지(www.labiennale.org)

○ 브라질 상파울루 비엔날레(Bienal de Sao Paulo)

- 1951년 설립되었으며 이탈리아 베니스 비엔날레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오래된 비엔날레임. 이 행사는 남미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행사로 디자인과 건축, 예술을 구분 짓지 않는 예술작품을 전시하고 있음.<sup>4)</sup>

○ 미국 휘트니 비엔날레(Whitney Biennale)

- 1932년 미국 내 작가발굴을 목적으로 회화와 조각부분으로 나누어 한해 두 번 개최하였으나 1973년부터 격년제 비엔날레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있고, 설치 미술, 행위예술과 건축 및 디자인 등을 포함하는 종합전시회로 개최되기 시작하였음.<sup>5)</sup>

○ 국내 사례

- **광주비엔날레**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음. 이 비엔날레는 아시아 최초의 비엔날레로 1995년 재단설립 및 초대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2014년에는 세계 5대 비엔날레로 선정되기도 하였음.<sup>6)</sup> 광주광역시는 격년단위로 개최되는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도모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지원 조례」를 제정( '95.6.21)하여 운영하고 있음.
- **부산비엔날레**는 기존 부산청년비엔날레와 부산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 바다미술제를 통합한 행사로 지난 2001년 부산비엔날레로 명칭을 변경하여 2002년부터 격년제로 개최해오고 있으며, 현대미술전시를 중심으로 한 종합전시회로 프로그램은 음악, 무용, 연극, 건축 등으로 구성됨.<sup>7)</sup>

(2) 건축 비엔날레

- 건축을 주제로 하는 대표적 사례로는 네덜란드 로테르담 국제건축비엔날레와 영국 런던 건축축제, 홍콩심천 도시건축 비엔날레, 시카고 건축비엔날레 등을 들 수 있음.

○ 네덜란드 로테르담 국제건축비엔날레(IABR, International Architecture Biennale of Rotterdam)

- “건축은 공공의 관심사이다” 라는 강령과 함께 2001년 설립되었으며, 건축 및 도시계획, 조경 등 국제적 지식과 경험을 결합하여 관객들과 공유하는 연례적 국제행사임.
- 이 행사는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와 달리 주제별로 진행되는 설계 연구중심의 비엔날레로서, 국제적 맥락에서 현재 네덜란드가 처해있는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임.<sup>8)</sup>

## <2016년 로테르담 국제건축비엔날레>



출처 : 로테르담 국제건축비엔날레([www.facebook.com/International.Architecture.Biennale.Rotterdam](http://www.facebook.com/International.Architecture.Biennale.Rotterdam))

### ○ 런던 건축 축제(LFA, London Festival of Architecture)

- 2004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런던 건축 축제(LFA, London Festival of Architecture)에서는 건축과 디자인의 중요성에 초점을 둔 토론, 전시회, 영화상영, 오픈스튜디오 및 가족행사 등을 운영하고 있음<sup>9)</sup>
- 런던시는 런던의 건축산업이 영국의 주요 수출분야 및 고부가가치산업임을 관련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하고, 건축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런던 건축 축제를 개최하고 있음.

### <런던 건축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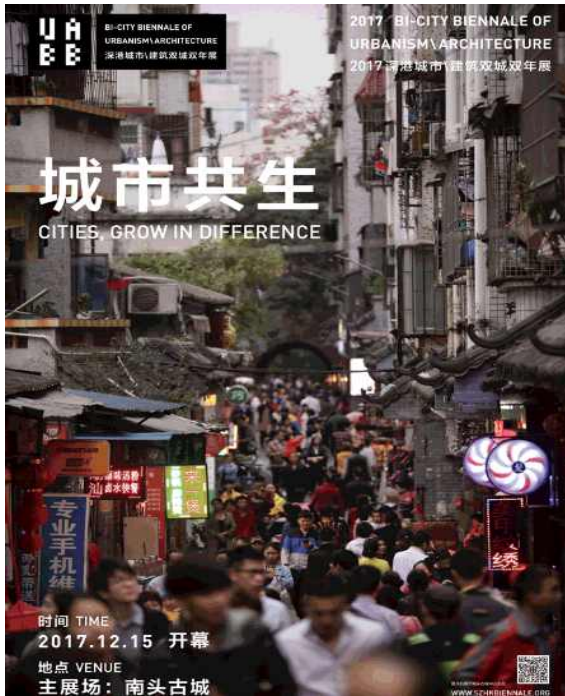


출처 : 런던 건축 축제 홈페이지([www.londonfestivalofarchitecture.org](http://www.londonfestivalofarchitecture.org))

### ○ 홍콩·심천 도시건축 비엔날레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와 가장 유사한 형태인 홍콩·심천 도시건축 비엔날레는 2005년부터 개최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도시·건축을 주제로 하는 유일한 비엔날레로서, 도시와 사회와의 관계 및 소통 가능성 등을 다루고 있음.
- 중국 심천시는 1980년 설치된 경제특별구역이며, 급속한 고도성장을 통해 홍콩의 GDP(국내총생산) 수준을 뛰어넘는 글로벌도시로 성장하였음. 이 행사는 인접한 홍콩시와 함께 초고속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고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재건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개최되기 시작하였음.<sup>10)</sup>

<홍콩·심천 도시건축 비엔날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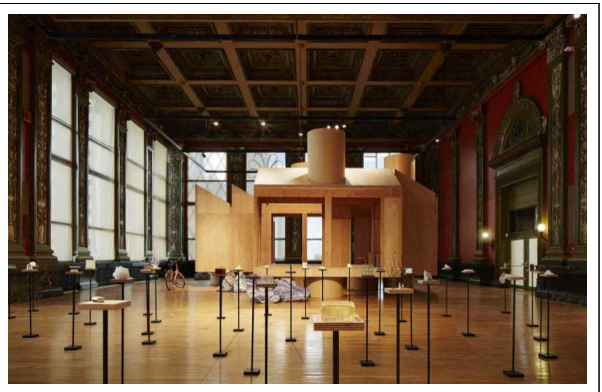


출처 : 홍콩·심천 도시건축 비엔날레 홈페이지([www.szhkbiennale.org](http://www.szhkbiennale.org))

○ 시카고 건축비엔날레

- 시카고 건축비엔날레는 2015년부터 개최되었으며 건축과 도시에 관한 국제포럼으로 현대사회에서 건축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전시회 및 토론회 등으로 행사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음.

<시카고 건축비엔날레>



출처 : 시카고 건축비엔날레 홈페이지([chicagoarchitecturebiennial.org](http://chicagoarchitecturebiennial.org))

- 3) 네이버 지식백과 “베니스 비엔날레”,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토론회”(2017.3.13.,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자료집, 베니스 비엔날레 홈페이지([www.labiennale.org](http://www.labiennale.org)) 참조.
- 4) 상파울루 비엔날레 홈페이지 참조([www.bienal.org.br](http://www.bienal.org.br))
- 5) 휘트니 비엔날레 홈페이지 참조([whitney.org](http://whitney.org))
- 6) “World’s Top 20 Biennials, Triennials, and Miscellennials”, Artnet(2014.5.19.) 기사 참조. Artnet(아트넷)은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미술거래 웹사이트임.

## □ 주요내용 검토사항

### 가. 개최시기(안 제2조)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를 “서울비엔날레”로 약칭하고 2017년부터 격년단위로 개최하도록 명시하였음.
  - 서울비엔날레로 약칭한 것은 비록 이 행사가 도시건축을 주제로 하는 행사이나, 서울을 대표하는 국제적 행사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 나. 서울비엔날레의 기본방향(안 제6조)

- 다양한 정책제안 및 실험을 중심으로 연구주도의 행사를 개최하는 것과 국내·외 도시간의 교류·협력, 공공·민간·대학·관계기관이나 단체 간의 교류·협력을 도모하는 등 서울비엔날레의 기본적인 추진 방향을 조례로 명시하였음.

### 다. 조직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안 제7조~제10조)

- 성공적인 행사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직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1·2부시장, 서울총괄건축가, 시의원 등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는 현재 구성·운영 중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7) 부산 비엔날레 홈페이지([www.busanbiennale.org](http://www.busanbiennale.org))참조

8) 네덜란드 로테르담 국제건축비엔날레 홈페이지([iabr.nl](http://iabr.nl))참조

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토론회”(2017.3.13.,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자료집, 런던 건축 축제 홈페이지([www.londonfestivalofarchitecture.org](http://www.londonfestivalofarchitecture.org))참조.

10) 홍콩·심천 도시건축 비엔날레 홈페이지([www.szhkbiennale.org](http://www.szhkbiennale.org))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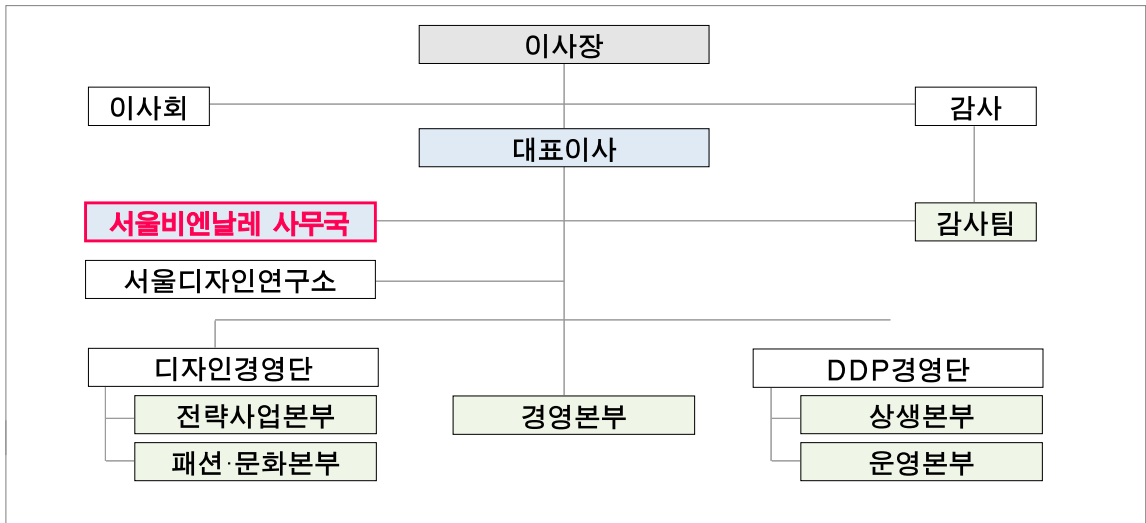
## 위원장을 포함한 총 15명 이내로 구성됨

### <조직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주요업무>

구 분	위원회 구성	주요업무
조직위원회 (안 제7조 및 제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 시장</li> <li>    부위원장 : 행정1·2부시장, 위원 중 1인(총 3인)</li> <li>◦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 행정1·2부시장, 서울총괄 건축가, 시의원, 외부전문가 등 10명 내외</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 승인</li> <li>◦ 예산승인</li> <li>◦ 출연기관 승인</li> <li>◦ 민간 후원사업 및 수익사업 승인</li> <li>◦ 휘장 등 관련 상징물 제정 및 사용승인</li> <li>◦ 그 밖에 서울비엔날레 관련 사항</li> </ul>
운영위원회 (안 제9조 및 제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 위원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함</li> <li>    부위원장 : 위원 중 호선</li> <li>◦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조정실장, 문화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건축국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서울시의원 2명, 출연기관 대표 이사, 외부전문가 등 15명 이내</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li> <li>◦ 예산수립 및 결산</li> <li>◦ 총감독 선정</li> <li>◦ 서울비엔날레 관련업무 운영</li> <li>◦ 그 밖에 서울비엔날레 관련 사항</li> </ul>

## 라. 서울비엔날레 개최 및 운영(안 제11조)

- 안 제11조에서 서울비엔날레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지정·설치할 수 있는 규정과 출연기관을 통한 수행방안을 모두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번 서울비엔날레 개최 이후 사업시행 방식 및 운영기관의 변동 가능성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됨.
- 현재 서울비엔날레는 (재)서울디자인재단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으로써 재단 내에 설치한 “도시건축비엔날레 사무국”으로 하여금 비엔날레 프로그램의 계획 및 관계기관 간 교류·협력업무, 홍보 및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출처 : 도시공간개선단

- 이 조항의 설치 취지를 고려하여 이번 비엔날레 개최 후 그 성과 및 보완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별도의 조직설치 여부 또는 현 서울디자인재단을 통해 수행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인 것으로 판단됨.
- 국내외 사례에서와 같이 대부분의 비엔날레가 이 행사를 위해 설립된 조직 및 재단을 통해 추진·운영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국내·외 비엔날레별 추진기관의 형태 및 설립연도>

비엔날레	추진기관	형태	설립연도
이탈리아 베니스 비엔날레	La Biennale di Venezia	재단	1895
브라질 상파울루 비엔날레	the Sao Paulo Biennial Foundation	재단	1962
미국 휘트니 비엔날레	The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기관	1930
네덜란드 로테르담 국제건축 비엔날레	The International Architecture Biennale Rotterdam( IABR)	조직	2001
런던 건축 축제	The London Festival of Architecture (LFA)	조직	2004
홍콩·심천 도시건축 비엔날레	Bi-City Biennale of Urbanism Architecture (UABB)	조직	2005
시카고 건축비엔날레	Chicago Architecture Biennia	비영리단체	2015
광주비엔날레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재단	1995
부산비엔날레	(사)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법인	2003

주 : 각 비엔날레별 홈페이지 참조 및 재구성

## 마. 출연금 교부 및 운영기금 설치·운영(안 제12조)

- 안 제12조제1항은 출연기관이 서울비엔날레 업무를 수행할 경우 현재와 같이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참고로, 지난해 9월 개최된 제270회 임시회에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출연동의안(의안번호: 1333)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출연금 규모는 총 55억원으로 확정됨.
- 제2항에서는 서울비엔날레 운영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sup>11)</sup>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기금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 논란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금 설치 규정의 경우 일반회계로 사업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검토해볼 여지는 있으나 현재는 별도의 세수계획이 없어 기금설치의 실익이 적으므로 기금 설치 규정은 추후 사업추진 경위를 평가 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 11)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③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 □ 종합의견

- 이 제정조례안은 2017년을 시작으로 홀수해에 격년단위로 개최되는 서울비엔날레의 법적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최초의 도시건축을 주제로 한 비엔날레 행사를 개최하여 국내외적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선점하고 글로벌 도시 서울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과 시의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 다만, 기금 설치 규정의 경우 일반회계로 사업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검토해볼 여지는 있으나 현재는 별도의 세수계획이 없어 기금설치 실익이 적다고 판단됨.
- 끝으로 이 조례제정과 함께 사업운영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일 사항은 첫째, 서울비엔날레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포함한 환류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고,
  - 둘째, 홍콩·심천 도시건축비엔날레와 주제, 범위 등이 다소 유사하거나 중복될 여지가 존재하는 바, 서울비엔날레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며,
  - 셋째, 행사가 개최되지 않는 짝수년도의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688
----------	---------

제안일자 : 2017. 4. 21  
제안자 : 도시계획관리위원장

## 1. 수정이유

- 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를 늘리고 일부 조문의 자구를 정리함.

## 2. 수정 주요내용

- 운영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명 이내에서 17명 이내로 확대함  
(안 제10조제1항)
- 서울비엔날레의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조문의 자구를 정리함.  
(안 제3조 및 제5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5조)

#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조직·인력 및 예산 확보를 통해 서울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10조제1항 중 “15명”을 “17명”으로 한다.

안 제12조제2항 중 “설치·운영”을 “설치”로 한다.

안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출연기관의 장은 서울비엔날레 위탁업무를 종료하였을 경우 잔여재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서울시로 귀속하여야 한다.

#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b>제3조(시장의 책무)</b> <u>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 및 조직 등의 지원에 협조하여야 한다.</u></p>	<p><b>제3조(시장의 책무)</b> <u>시장은 조직·인력 및 예산 확보를 통해 서울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p>
<p><b>제5조(관계기관의 협조)</b> ①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치구·공공기관·법인 또는 관계기관, 단체의 장에게 <u>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u></p> <p>② (생략)</p>	<p><b>제5조(관계기관의 협조)</b> ① ----- ----- -----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정안과 같음)</p>
<p><b>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b>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u>15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② (생략)</p>	<p><b>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b> ① --- ----- ----- 17명----- ----- -----.</p> <p>② (제정안과 같음)</p>
<p><b>제12조(출연금 등)</b></p> <p>①(생략)</p>	<p><b>제12조(출연금 등)</b></p> <p>① (제정안과 같음)</p>



②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지속적인 개최·운영을 위하여 서울비엔날레 운영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5조(잔여재산의 귀속)** 시장은 출연기관이 서울비엔날레 사업수행 위탁업무를 종료하였을 경우 잔여재산을 서울시로 귀속하여야 한다.

② -----  
-----  
----- 설치-----.

③ (제정안과 같음)

**제15조(잔여재산의 귀속)** 출연기관의 장은 서울비엔날레 위탁업무를 종료하였을 경우 잔여재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서울시로 귀속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의 국제적 교류와 건축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최시기)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이하 “서울비엔날레”라 한다)를 2017년부터 격년단위로 개최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조직·인력 및 예산 확보를 통해 서울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비엔날레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치구·공공기관·법인 또는 관계기관,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서울비엔날레의 기본방향)** 서울비엔날레가 추구하는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건축 가치탐구, 주제연구 및 사례 중심으로 한 연구 주도의 비엔날레
2. 현대 도시의 문제해결을 위한 국내·외 교류 협력
3. 도시건축정책 발굴을 위한 서울시 및 공공기관·민간기업·대학·관계기관 및 단체 간 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울비엔날레의 사업계획 승인
2. 서울비엔날레의 예산 승인
3. 서울비엔날레의 개최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할 출연기관 승인
4. 서울비엔날레의 민간 후원사업 및 수익사업 승인
5. 서울비엔날레의 휘장 등 관련 상징물 제정 및 사용승인
6. 그 밖에 서울비엔날레와 관련한 사항

**제8조(조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직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② 위원 구성은 시장, 행정1·2부시장, 서울총괄건축가 및 시의원과 그 외 서울의 도시건축문화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한다.
- ③ 위원장은 시장이 하며, 부위원장은 행정1·2부시장 및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3명으로 한다.
- ④ 조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
- ⑤ 위촉직 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 ⑥ 조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조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울비엔날레의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서울비엔날레의 예산 수립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서울비엔날레 총감독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서울비엔날레 관련 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서울비엔날레와 관련한 사항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기획조정실장

2. 문화본부장

3. 도시재생본부장

4. 도시계획국장

5. 주택건축국장

6. 도시공간개선단장

7. 서울시의원 2명

8. 출연기관의 대표이사

9. 서울의 건축, 도시, 디자인 및 문화예술 관련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매 회의마다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서울비엔날레 개최 및 운영)** ① 시장은 서울비엔날레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지정 또는 설치하거나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연기관(이하 “출

연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울비엔날레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범위는 시장이 정한다.

**제12조(출연금 등)**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서울 비엔날레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단, 출연기관은 출연금에 대하여는 서울비엔날레 업무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지속적인 개최·운영을 위하여 서울비엔날레 운영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보조금 등의 유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출연기관의 장은 사업연도마다 서울비엔날레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출연기관의 장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서울비엔날레 관련한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14조(지도 및 감독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서울비엔날레 업무에 관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

무를 확인·검사하게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기관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잔여재산의 귀속) 출연기관의 장은 서울비엔날레 위탁업무를 종료하였을 경우 잔여재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서울시로 귀속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